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91
------------	------

2017년 2월 2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7. 1. 2 남창진 의원 발의(찬성자 13명)(2017. 1. 2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요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주민들이 쉽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바,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3. 주요골자

- 가.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나. 제2항의 신설에 따라 각 항의 번호를 수정하고 같은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항의 번호를 수정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6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1)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파일 등의 형태로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남창진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안 도면 등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입안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정보 접근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됨.

1)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을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 제3항-----</p> <p>⑤ ----- 제3항-----</p> <p>⑥ -----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p>

【붙임】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